

프랑스 국립 암연구소, 일과 암(cancer) 정책보고서 발표

- 프랑스

프랑스 국립 암 연구소(Institut National du Cancer)는 프랑스에서의 작업성 암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.

상당수의 병리현상은 근로로부터 기인하며, 프랑스에서는 작업성 암에 관한 발병 사례가 230~500만명으로 추정됨.

2009~2013년 암계획 중의 두가지 정책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함

작업성 암의 현황

-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후 암진단시까지 20~40년정도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.
- 석면, 비소, 벤젠, 크롬, 염화비닐, 방향족 아민, 니켈, 목분진, 가죽먼지, 전리방사선 등이 암위험을 증가시키는 작업성 요인임
- 사업장에서의 물질과 암과 관계는 다음과 같음.
 - ▶ 폐암(석면, 기타독성물질), 중피종(일차적으로는 석면으로부터 기인), 비강암(목분진, 니켈, 크롬), 방광암(방향족 아민, 콜타르), 백혈병(벤젠, 전리방사선)
 - 작업성 암예방에는 특정별암물질 사용금지 및 유럽 REACH규칙의 실시와 함께 적절한 규제조치의 도입도 중요
 - 또한 프랑스 법에는 기업에 대하여 모든 발암물질을 위험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함을 요구하고 있음

산업의(産業醫)의 역할

- 2001-97 명령(01년2월1일 시행)에 명시된 기업의 산업의사의 책임은 건강진단의 실시(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시) 및 WORK STATION(노출에 관한 정보수집과 근로자에의 교육)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함
- CMR(Carcinogenic Mutagenic Reprotoxic)물질 노출작업에 적합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.
※CMR : 발암, 돌연변이, 생식기이상 유발물질

사업주의 책무

- 프랑스 고용법 L4121-1 및 L4121-5에 규정되어 발암물질의 사용이 엄격히 규제됨
- 작업과 관련된 위험과 그 예방에 관한 방법을 근로자에게 정보제공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- 근로자의 노출에 대해 정기적인 측정실시 및 사업장 노출제한규정 값 또는 권장 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.
-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
 - ▶ 위험의 평가실시 / 가능한 경우, 위험물질을 대체할 것 /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밀폐시스템을 사용함 /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수집할 것 / 노출근로자의 인원수를 제한 / 긴급대책을 도입 / 위험구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계를 정하여, 용기에 라벨표시를 할 것 / 근로자를 위한 의학검사를 실시

노동기준감독의 역할

- 모든 고용관련 법규준수에 책임을 짐(특히 근로조건과 안전)
- 07년 9월 28일 명령은 노동기준감독에 CMR위험검사 및 CMR물질노출에 관한 지속적인 위험상태가 발견된 경우 강제적으로 업무 일시중지시키는 등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

작업성 질병의 인정

- 작업성 질병으로 인정되는 의학, 기술, 관리상의 조건은 프랑스 사회보장법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